

## 특 집

## 수출어음보험제도

## I. 수출보험의 개요

## 1. 의 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지체·파산, 외환사정악화에 따른 수입국정부의 대외송금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 2. 연 혁

수출보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법(법률 제2063호, 제정 '68. 12. 31)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서 '69년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이래 그간 대한재보험공사('69. 2. 18~'76. 12. 31), 한국수출입은행('77. 1. 1~'92. 7. 6)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보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92. 7. 7자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공식 발

족되면서 전담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 1968. 12 : 수출보험법 제정공포
- 1969. 2 : 수출보험업무 개시  
(재무부 관장, 대한재보험공사대행)
- 1977. 1 : 수출보험업무 대행기관 변경  
(대한재보험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 1979. 1 : 관장부처 변경  
(재무부 → 상공부)
- 1992. 7 :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3. 수출보험기금

수출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에 의거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원이며 기금의 결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적립금에 의해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여 수출보험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무한한 담보력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보험 기금조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1년말 현 재	'92년계획	'92년말 누 계
정부출연금	486	364	850
민간출연금	50	-	50
계	536	364	900

4. 운영종목

일반 소비자 상품의 단기수출 뿐만 아니라 산업설비·기계류 등의 중장기 연불수출, 해외건설 및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한 모든 대외거래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여 9개의 보험종목으로 운영한다.

대 상 거 래		보 험 종 목	주 요 내 용	보 험 계 약 자
상 품 수 출	단 기 거 래 (일 반 상 품)	수출어음보험	신용장 및 무신용장 방식 단기수출 거래의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외 국 환 은 행
		일반수출보험	수출불능 및 수입자파산에 의한 대 금미회수 위험 담보	수 출 자
		수출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선적전 용자금 회수불능 위험담보 위탁판매에 따른 손실 담보	외 국 환 은 행 수 출 자
	중 장 기 거 래 (자 본 재)	중 장 기 연 불 수 출 보 험	공급자 신용거래에 의한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수 출 자
수출대금금융보험		전대차관, 직접대출 등 구매자 신용 거래에 의한 대금미회수 위험담보	외 국 환 은 행	
해 외 건 설 공 사		수출보증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은행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위험 담보 건설공사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외 국 환 은 행 해 외 건 설 업 체
해 외 투 자		해 외 투 자 보 험	투자원금 및 과실금 회수불능 위험 담보	해 외 투 자 자

II. 수출어음보험 제도

1. 제도의 개요

수출자가 선적을 한 후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동 어음의 만기에 어음지급인(수입자, L/C개설은행)으로부터 어음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자가 받는 혜택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게 되므로 은행이 안심하고 화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어 수출자는 용이하게 수출금융을 수혜받을 수 있고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보험

금이 은행앞으로 지급되므로 그 금액만큼은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적극적인 신시장개척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2. 제도의 내용

### 가. 보험의 목적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등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증서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외국환 은행이 직접 매입한 경우에만 보험부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출어음보험의 담보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보상하는 손실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이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 입은 손실을 말한다.

비상위험	신용위험
○ 수입국정부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환거래 제한조치	○ 어음지급인의 파산 등에 따른 지급불능
○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혁명, 정변 등	○ 어음지급인의 지급거절 또는 지체
	○ 어음지급인 인수거절 또는 불능

### 다. 보험가액·보험금액 및 보험금의 지급액

보험가액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 (어음금액×매입일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보험금액	보험가액의 90%금액
보험금액의 지급액	실제 손실발생액의 90%

### 라. 보험기간

화환어음의 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 마. 보험요율 및 보험료

$$\text{보험료} = \text{보험금액} \times \text{보험요율}$$

보험료납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인 매입은행이 되나 보험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는 수출자가 되므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별첨참조(국별그룹, 국별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에 문의)

## 3. 제도 이용절차

수출어음보험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으로 구분한다.

개별보험	○ 보험자(공사)와 보험계약자(은행)는 보험부보와 보험인수에 있어 각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

개별보험	○ 보험계약자로서는 위험이 크다고 느끼는 거래만 보험부보할 수 있으나, 보험자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포괄보험	공사가 외국환은행과 포괄보험특약, 수출자와 포괄보험협약을 체결하여 360일 이하의 D/A, D/P, L/C Usance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이를 자동인수하는 방식

가. 수출어음보험 - 개별보험

(1)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의뢰

당해 수출거래건 계약추진시 거래당사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출자 : 신용정보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첨부서류 포함)

수입자 : 수입자신용조사의뢰서(L/C거래인 경우에는 L/C개설은행)

\* L/C개설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완료되어 있으므로 조사의뢰서 제출전 전화로 먼저 문의

수출자신용조사의 경우 1주일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입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의뢰할 필요가 있다.

(2) 인수한도책정 신청 통지

신용조사완료후 매입은행 명의로 부보이전에 당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인수한도책정을 신청하면 신청내용 및 신용조사결과를 심사하여 인수한도책정후 매입은행앞으로 통지한다.

\* 잠정인수한도제 도입 : 수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L/C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범위내에서 인수가능하다.

무신용장 : 당해 수입자와의 최근 1년간 또는 전년도 결제실적이 5만불이상인 경우 미화 5만불까지 인수가능

신용장방식 : 신용조사 완료전이라도 미화 10만불까지 인수가능

\* 중소기업 지원강화 : 인수한도 신청내용 심사후 사정된 금액에 2배까지 인수한도를 증액책정할 수 있음.

인수한도의 개념

동일한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보험에 부칠수 있는 최대 누적액을 말한다.

책정된 인수한도는 몇차례에 걸쳐 사용하는간에 누적액이 동한도 내에 있으면 가능하며 부보된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되살아나는 회전운용방식이다.

(3) (4) 화환어음의 매입 및 통지

인수한도 책정후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매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지한다.

(수출어음보험 화환어음 매입통지서)

(5) 보험관계의 성립

매입통지서를 접수한 공사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한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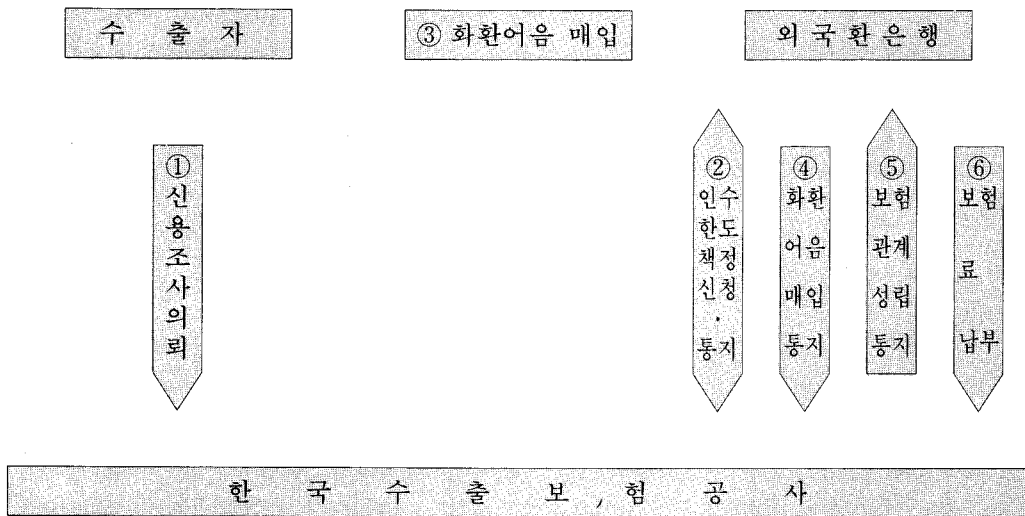
시키며 보험자의 보험책임을 매입일로 소급하여 개시한다.

(6) 보험료의 납부

매월초부터 말일까지 매입통지한 건에 대하여 다음달 초에 보험관계성립통지와 함께 보험료납보통지를 하게 되며 동보험료는 2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다.

(예) 91. 1~9. 30 매입통지건 → 10. 20까지 보험료 납부

〈개별보험 이용절차도〉



나. 수출어음보험 - 포괄보험

부보대상 거래

포괄보험 부보대상거래는 360일 이하의 무신용장방식 및 기한부신용장 거래이다. (본지사간 거래, Confirmed L/C, L/C at sight 거래는 제외됨)

※ 포괄보험 운영근거: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실시요령(상공부고시 제81-39호, '81. 11. 11)

(1) 포괄보험 특약의 체결

외국환은행은 포괄보험 이용업체의 부보대상전거래를 부보하고 공사는 이를 모두 인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다.

('92. 9. 1 현재 수출보험공사는 국내 23개 금융기관과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해 놓고 있으므로 수출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이중에 포함될 경우 달리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2)(3) 포괄보험 협약의 체결

수출자는 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부보 동의를 발급받아 부보대상거래 전부를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부보토록 하고 공사는 이를 모두 인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4)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수입자에 대한 매입통지건은 보험관계성립이 유보되었다가 보험기간내 신용조사가 완료되면 매입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5)(6) 화환어음의 매입통지

(7) 보험관계의 성립

(8) 보험료의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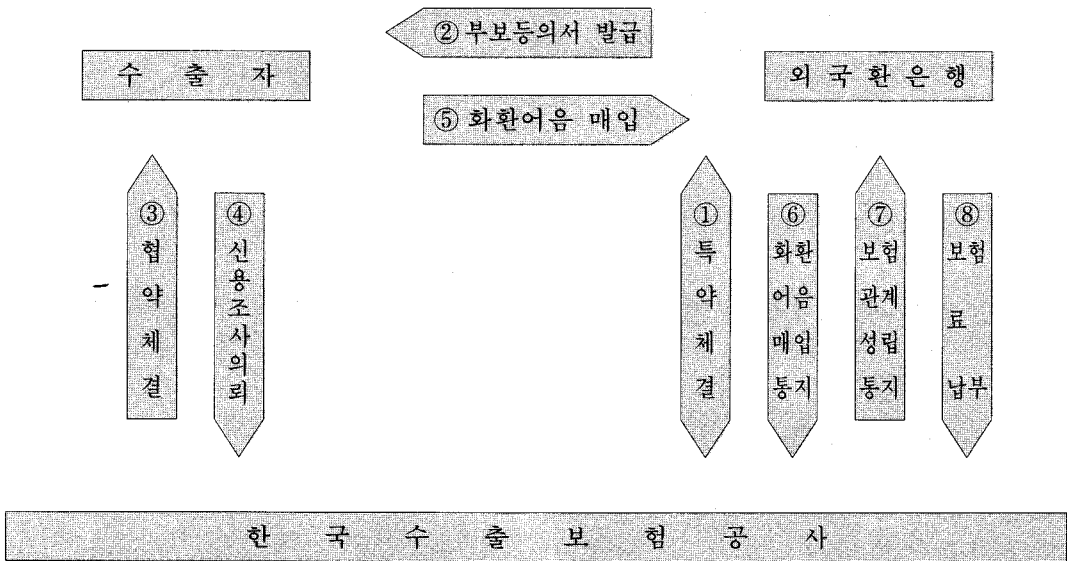
개별보험과 동일

\* 포괄보험에서의 인수한도

신용장방식인 경우 한도제한없이 인수한다.

무신용장방식인 경우는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A~D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부여된 한도의 부족시에는 증액책정이 가능하다.

〈포괄보험 이용절차도〉



다. 포괄보험 이용시 유리한 점

보험료부담에서 부보대상거래 전부에 대하여 50%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인수한도

책정절차의 생략(신용조사 완료시 자동부여)등 서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수한도 책정규모도 개별보험 이용시보다 5~10배수준 이용 가능하다.

#### 4. 보험금 지급 절차

##### 가. 보험사고 발생통지

화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어음보험 손실발생통지서)

만기전에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확실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수출어음보험 위험발행통지서)

##### 나. 보험금의 지급청구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어음보험 보험금청구서)

##### 다. 보상적격 여부 판정(보험사고조사)

사고조사실시 및 보험금의 지급액을 사정한다.

##### 라.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고 발생건에 대하여 만기일로부터 2~5개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실제 손실 발생액의 90% 지급)한다.

### Ⅲ. 기타 부대 서비스 안내

#### 1. 수출신용정보센터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진흥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수단이라는 점에서 수출보험종목의 운영 이외의 각종 신용정보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수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정보수집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건전한 수출지원을 도모코자 수출신용정보센터를 수출보험공사의 조사부내에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외상사 및 국외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자료와 외국정세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국외 수입자 및 수출보험인수제한수입자 명부 등의 제공
- 채권추심기관의 소개 및 알선
- 기타 국외신용정보에 관한 상담

수출신용정보센터에서는 이와같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 국외신용조사, 제휴기관,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Berne, Union),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자료를 입수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열람 등과 같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2. 방문홍보 실시안내

수출보험에 관한 업계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한편 보험수요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수출업계를 직접방문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수출보험공사

〈별첨〉

1. 基本料率表

가. D/A거래 요율표

국별그룹 기간	I (0.8)	II (1.0)	III (1.2)	IV (1.6)
30	0.38	0.48	0.58	0.77
90	0.58	0.72	0.86	1.15
180	0.86	1.08	1.30	1.73
270	1.15	1.44	1.73	2.30
360	1.44	1.80	2.16	2.88
180일 초과시	매 90일마다 기준요율(II)에 0.36%씩 가산			

나. D/P거래 요율표

국별그룹 기간	I (0.8)	II (1.0)	III (1.2)	IV (1.6)
30	0.19	0.24	0.29	0.38
90	0.29	0.36	0.43	0.58
180	0.43	0.54	0.65	0.86
270	0.58	0.72	0.87	1.15
360	0.72	0.90	1.08	1.44
180일 초과시	매 90일마다 기준요율(II)에 0.18%씩 가산			

다. L/C거래 요율표

국별그룹 기간	I (0.8)	II (1.0)	III (1.2)	IV (1.6)
30	0.14	0.18	0.22	0.29
90	0.22	0.27	0.32	0.43
180	0.33	0.41	0.49	0.66
270	0.44	0.55	0.66	0.88
360	0.55	0.69	0.83	1.10
180일 초과시	매 90일마다 기준요율(II)에 0.14%씩 거산			

2. 特別割引率表

구	분	내용	적용범위
I. 지급보증 할인율	1.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 보증	25%	L/C거래 에 대해 서는 지 급 보증 할인율의 적용을 배제함.
	2. 정부(중앙은행 포함) 보증		
II. 공공수입자 할인율		10%	
III. 본지사간 할인율		25%	

\* 특별할인율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에게 유리한 요율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3. 包括保險割引率表

전기 각 요율중 해당요율을 적용한 후 50% 할인

4. 割増率表

구	분	적용대상	적용내용
1. 수출업체 손해율별 할인율	200~500%		할인율적용 기준 율의 50% 할증
	500%이상		할증율 적용 기 준을 100% 할증
2. 비상위험 할증율	단기보험종목에서 비상위험 사고경 험이 있는 국가		기본요율의 100% 할인
	비상위험이 현존 하나 수출진흥정 책상 수출보험 지 원의 필요성이 있 는 국가		기본요율의 200% 할증

- \* 할증율 적용 기준율은 기본요율에 특별할인  
율, 포괄보험할인율이 적용된 후의 요율임.
- \* 비상위험할증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할인율 이외의 모든 할인율의 적용이 배제됨.
- \* 할증율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인  
율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 \* 비상위험 할증율 대상국 : 이라크, 쿠웨이트

5. 中小企業割引率

전기 각 요율중 해당요율을 적용한 후 10% 할인

\* 수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적용함.